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2. 1. 20.(목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 랑, 사무관 배기훈, 주무관 전성이 ☎ (044) 201-3426, 3452	
보 도 일 시		2022년 1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0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감정평가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… 21일부터 시행 **- 기준제정기관 지정·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·공정성 강화 -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감정평가법 시행령」 및 「감정평가법 시행규칙」 등 2건의 개정안이 '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'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(20.9)'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감정평가법」)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,

- 개정법률*의 시행(22.1.21)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.

*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근거 마련,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

□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*의 업무, 지정 요건 및 절차

*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'감정평가 실무기준'의 연구와 제·개정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 또는 단체

○ '감정평가 실무기준'은 '13년 제정되어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,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그간 부족한 실정이었다.

-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**전담기구**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,
- 작년 7월 「감정평가법」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(기준제정기관)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**금번 하위법령 개정**을 통해 기준제정기관의 **업무,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**을 규정하였다.
-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,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·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, 실무기준 해석 등을 업무로 한다.
-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,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**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**을 하면,
- 국토교통부는 **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의 심의**를 거쳐 **적정 기관**을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.
-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, 변호사 등 전문가로 **전담조직(TF)**을 구성하여 기준제정기관의 세부 기능, 조직구성, 필요 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, **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**할 계획이다.
- 기준제정기관이 지정되면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·전문적 관리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 환경 변화 및 기준 관리 수요에 대응한 기준의 제·개정이 원활해지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②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* 기준 및 절차

- *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 강화를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「감정평가법」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정평가법인등이 상호 간 검토·점검

-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**적정성 검토**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,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*할 수 있다.

*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토지보상법」 등 관계 법령에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

-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게 되며,

-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**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, 결과서를 작성·발급한다.**

-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**시장에 미치는 영향,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**하고, 필요시 전문가·업계 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,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

-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제도의 도입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상호 간 검토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이 랑 부동산평가과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**감정평가 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**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배기훈 사무관(☎ 044-201-3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